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서

### 사업명 특수재봉기 활용 봉제인력 일자리 창출

제1조(목적)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성북구청(이하 '을'이라 한다.) 및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지원기간) ① 지원기간은 2015. 2. 2.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 '갑'은 '을' 및 '병'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을'과 '병'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갑'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222,798천원을 지원하며 '을'은 자치단체 부담금 25,360천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보조금은 '을'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을'은 보조금을 받은 즉시 '병'에게 사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을'과 '병'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보조금의 관리) ① '병'은 보조금을 별도통장을 사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사업수행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을’과 ‘병’은 사업 수행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 (항목간변경, 항목사업비 20%를 초과하는 항목내 세항목간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을’과 ‘병’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을’과 ‘병’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을’과 ‘병’은 ‘갑’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과 ‘병’의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환수한다.

④ ‘을’과 ‘병’은 국가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경우 ‘갑’은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한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 추가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각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⑤ 부정수급한 사업에 대해 약정해지하고, 부정수급한 기관은 약정해지일로부터 2년간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 ① ‘을’과 ‘병’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4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갑’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 ‘을’과 ‘병’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점검·평가) ① ‘갑’은 ‘을’과 ‘병’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 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과 ‘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의무) ① ‘을’과 ‘병’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중요변경사항(사업내용 변경, 예산항목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병’은 ‘갑’과 ‘을’에게 사업실적에 대한 최종 보고(연구사업의 경우 연구결과 요약분 포함)를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지침 등 관련 법규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과 ‘병’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2월 2일

(갑)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

이 화 영



(을) 성북구청장

김 영 배



(병)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노 양 호

